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

1. 관련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(2022.3.11.)

2.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을 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〈 주요 변경사항 〉

가. (격리면제서 발급기준) 국내등록 예방접종완료자('22.3.21.), 국내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('22.4.1.) 격리면제 적용에 따라 예방접종 미접종, 격리면제 제외국가 대상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

※ '22.3.21.(월) 이후 예방접종완료자로 격리면제가 가능할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진행중인 건은 반려처리. 단, 미접종 및 격리면제 제외국가 신청자가 반려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

나. (재택근무 중단) 입국 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중단

※ '22.3.14.(월) 발급건부터 적용

다. (입국 후 6~7일차 진단검사) 입국 후 6~7일차 신속항원검사(RAT)실시

※ '22.3.10.(목)부터 기시행

라. (유효기간)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

※ '22.3.14.(월) 발급건부터 적용

마. (시행일) '22.3.14.(월)

※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영문 서식 추후 통보 예정

붙임 1.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
2.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 1부. 끝.

교 육 부 장



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주무관

강진아

행정사무관

김은미

학생건강정책
과장

전결 2022.3.17.

정희권

협조자

시행 학생건강정책과-2250 ((2022.3.17.)) 접수 (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교육부 14동 (어진 / www.moe.go.kr
동)

전화 044-203-6962 전송 044-203-6438 / jinariver@korea.kr / 공개